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안미자 의원)

의안 번호	23-137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0. .

발의자 :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 남해석,
신종갑, 안미자, 오옥자, 이한동,
장정희, 차해영, 최은하, 한선미

1. 제정이유

마포구에 웰다잉(Well-Dying)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 예고: 2023.10.6. ~ 10.11.

나. 의견제출: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(Well-Dying)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웰다잉 문화 조성”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.
2. “사전연명의료의향서”란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웰다잉 문화조성 사업)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
 2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
 3.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
 4.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·육성 지원
 5.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6. 14.] [법률 제19466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·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